

#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95. 12. 19  
사회산업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86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대구광역시 조례 제191호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  
함으로써 업무 집행과정의 잘못 및 점을 지적 하고, 행정을 감사 통제하고 각종  
안전성과 예산집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앞으로의 행정집행의 방향  
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2. 감사기간

95. 11. 28 ~ 12. 4(7일간)

## 3. 감사실시 대상기관

대 상 기 관	관 련 근 거
구청 각과·소(5개과·소)	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5조
각 동	"
쓰레기처리 대행업자,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	"

## 4. 감사반의 편성 — 11명

대 상 기 관	감 사 위 원 장	감 사 위 원	감 사 보 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 청 사 회 과 위 생 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 소 과 보 건 소 (복지사업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각 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쓰레기처리대행 업체, 분뇨수집 운반및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사회산업위원장 정경진 의원	최종백 의원(간사) 박종열 의원 허노환 의원 허중구 의원 권춘갑 의원 황성기 의원 홍선동 의원 우종희 의원 정원경 의원 박양현 의원	전문위원 백창기 행정 7급 양명채 기능10급 황우영 기능10급 한순천

##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95. 11. 28 (화) 10:00	사 회 과	달서구의회 소회의실 II	1. 감사실시 선언 2. 위원장 인사 3. 증인 선서 4. 사회산업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감사실시(현장확인)
'95. 11. 29 (수) 10:00	위 . 생 과 지역경제과	"	감 사 실 시
'95. 11. 30 (목) 10:00	환 경 보 호 과 청 소 과	달서구의회 소회의실 II	감 사 실 시
'95. 12. 1 (금) 10:00	보 건 소 복지사업과	"	"
'95. 12. 2 (토) 10:00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전부서	"	현 장 확 인
'95. 12. 3 (일)	공 휴 일		
'95. 12. 4 (월) 10:00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전부서	달서구의회 소회의실 II	1. 보충질의 및 답변 2. 감사결과 강평 3. 감사종료 선언 ※해당부서장 전원참석

## 6.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가. 자료제출 요구사항
- 나. 감사대상 사무관련사항
- 다. 주요 현안사항
- 라. 구정질문 중 미처리된 사항
- 마. 주민진정·건의사항

## 7.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 별첨

#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회신업위원회

95. 11. 28 12. 4(7일간)

일련 번호	부 회 명	세 목	시 적 사 항	치 리의 견
1	사 회 회	○ 정로당 부설 시 공사채 발행	○ 원내 정로당중 신축이던 보수정로당이 공적후 1~2년 이내 부설 공사 시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공적감축이나 공공감서지 지밀한 감사가 뒤따르지 못한다 원인이 적다고 보면 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시 정
2	사 회 회	○ 청소년 지도위 원 사기 앙양책 미흡과 신분증 미갱신	○ 청소년의 비행·범죄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위촉·활동중인 원내 190명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 중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터 제공 및 시기안양 대책을 위한 지원예산이 타구에 비해 극히 적게 편성됨에, 세무적 인 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한 시행을 요구하며, 정로당 지도위원 장이 소기하고 있는 신분증이 95년 5월 31일로 기효가 만료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기말까지 갱신교부치 않은 것은 업무소홀로 판단 됨. 바, 즉시 갱신·교부토록 조치하기 바람.	시 정
3	사 회 회	○ 청소년공무원 에 대한 홍보 및 지도·감독 미흡	○ 권대에 설치·업터관리중인 7개 공무원이 이용가능 면적에 비해 갈채 이용하임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 95년도에 1억권이상의 자금 예산이 지원된 지관로 보면 예산낭비가 권력의 요요가 없디고 보함 바, 철저한 지도감독과 홍보를 통하여 기강형편이 이러운 학생들이 기실 자용을 상호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원용목 표 95년잔까지 시정의 추가 건립은 지도감독 하기 바람.	시 정

일련 번호	부서 별	제 목	내 容	의 견
4	사 회 과	○ 생활보호대상 자 및 저소득주 민 직업훈련비 지원실적	○ 현재 각종 기업체에서 인력난으로 기업운영에 많은 애로가 발생되고 심지어 외국에서 까지 인력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술습득으로 취업·생활안정을 기하는 행정지원 대책도 좋은 방안이 되겠으나 기술여부와 상관없이 구인을 요청하고 있는 업체의 현실정을 감안한다면 구태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행정지원을 해야 하는지 의문과 차라리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의 원만한 상호연결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시기 바람.	건 의
5	사 회 과	○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출내역 중 일부 내용 경비과다 지출	○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출에 있어 95년도 불우저소득노인 200명에 대하여 호도관광을 실시하고 7백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1인당 경비가 35,000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일반주민들의 1일코스 관광경비도 평균 20,000원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숫자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시정 요망.	시 정
6	사 회 과	○ 학산종합사회 복지관내 경로 당 운영 지도 감독 미흡	○ 학산 종합사회복지관내의 경로당은 카톨릭재단에서 위탁운영되고 있으나 관리단체의 자체운영지침이 고정 프로그램화(이용시간제한, 이용자 금지사항 과다 설정 등)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출입문을 폐쇄하여 노인들의 시설 활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케 함으로써 경로당 이용을 꺼리며 운영지침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바, 행정지도·감독을 강화함과 아울러 노인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시행하거나 최소한 출입부 시건장치는 회원들이 직접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요망.	시 정

연번	부기명	세목	시각적시행	시리의견
7	취생회	고급공공·취 침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서포	○ 농장적으로 위법·불법행위는 부류장이나 특수계층 주민들이 지 수 이용하는 고급 공중위생업소(타기탕, 호텔내 이용업소 등)나 취침객업소(유호주점 등)에서 상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침검업제수 대비 위법업제수기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행정 지도·단속이 미흡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함. 이들에 대한 강력 한 행정지도·단속을 시행토록 조치하기 바람.	시 정
8	지역경제회	○ 중소기업육성 자금 이자부진 기간 연장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에 대하여 시에서 1년간 3% 정도의 이 자보전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간이 만기건으로 인하여 업체들이 부담 해소에 미흡한 점이 많은 바, 이자보전기간을 2~3년으로 연장토 록 시에 건의 요망.	건 의
9	지역경제회	○ 농정서의 불법 진상에 대한 지 도·단속실적 비음.	○ 관내 특히 월배·상리지역의 직간접 농정서가 아닌 농민 이용하 여 각종 건축 폐기물·전도 등을 사용·산출하는 등 불법 진용하 여가 농촌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지도·단속의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되므로 비 강력한 단속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건 의
10	지역경제회	○ T.P.G 가스용 기공반 가량의 적재업 구조 변형	○ T.P.G 가스용 기공반 가량의 적재량이 과잉되어 있어 각종 가스 사고에 따른 주민들의 잠재해의기으로, 이를 부수 주민들로 하여금 불안함을 고조시키고 있음에 직재업 구조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검토 요망.	건 의

일련 번호	부서 별	제 목	지 적 사 항	처리 의견
11	환경보호과	○ 자동차 배출가 스 단속 강화	○ 우리 지역은 월배·성서공단과 많은 주민으로 인하여 타지역에 비해 폭증하는 교통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의 피해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이에 대한 점검·단속실적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바, 충분한 장비구입·단속활동 강화 등의 대책을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환경개선부담금 교부비를 상향 조정 등)을 연구·검토하여 상급기관에 건의·수렴토록 하시기 바람.	시 정
12	환경보호과	○ 명예환경감시 원의 활동력 강화	○ 현재 우리구 63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지역별로 위촉·자원봉사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활동력제고와 사기양양 대책(예산지원, 표창 등)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세부 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조치 바람.	시 정
13	환경보호과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등 제도적인 대 책 마련	○ 관내 각종건설사업장, 레미콘 회사 등에 설치된 세륜시설의 불량 또는 미흡으로 비산먼지에 따른 각종 주민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세륜시설 설치(단계 적인 세륜시설, 지동세륜 시설) 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검토하여 환경관리청에 건의·시행토록 하시기 바람.	건 의
14	청 소 과	○ 동별로 1개소 이상의 쓰레기 소각로 설치	○ 쓰레기 총량제 실시와 더불어 처리비용 등을 감안한 무관심으로 각동의 뒷골목, 공한지, 가로 등에 생활쓰레기가 자주 방기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질 해소키 위해 공공용 봉투의 충분한 지급과 예산확보를 통하여 동별 1개소 정도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 요망.	건 의

일련 번호	부서 별	제 목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15	청 소 과	○ 불량 쓰레기봉 투 발생 억제대 책 미흡	○ 주민들이 사용중인 쓰레기 봉투가 수량부족, 제품의 재질불량, 제조과정상 발생된 불량봉투 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시 정
16	청 소 과	○ 위조 쓰레기봉 투 유통 방지대 책 미흡	○ 현재 판매중인 쓰레기 봉투는 단일색상으로 인쇄되어 있고, 제조업체 및 연락처 등이 미기제되어 있는 등으로 헛점이 많아 위조품 발생 우려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만일 위조품 유통사례 발생시는 자치제정 확보에 막대한지장과 사용자민들의 혼란등을 감안한다면 극히 중대한 사안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연구·검토하여 시정토록 조치 바람.	시 정
17	청 소 과	○ 쓰레기 봉투 제조·판매와 관련한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	○ 우리구 제조·납품업체가 6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관내 업체는 1개소 밖에 없어 자치구 재원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인데 관내 업체를 지정토록 건의 하시기 바람. 업체수 또한 현실상으로 너무 많아 관리·감독에 애로가 발생되므로 2~3개소 정도로 축소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구자체에서 봉투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봉투면을 활용하여 수수료 받고 스폰서가 광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관련업무 추진에 따른 연간 60억원정도의 적자폭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연구·검토하시기 바람.	건 의

일련 번호	부서 별	제 목	지 적 사 항	치리의견
18	청 소 과	○ 불량 쓰레기 봉 투 회수 및 처 리대책 미흡	○ 방부제작시 또는 유통후 불량품은 구장에서 폐기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한빈도 회수 폐기치 않고 지정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 제품이 불법유통될 우려가 많고 관리 감독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적정조치를 강구치 않고 있는 바, 즉각 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시 정
19	보 건 소	○ 보건소의 의료 전문 인력 보강	○ 우리구가 복지시범구로 지정되고 금년 8월 시범복지시부소를 개 소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업무를 병행·시행하 고 있으나, 기 확보된 장비의 운용에 있어서도 의료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인력증원과 치료분야 확대(한 방, 치과 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연구·검토하여 중앙부처 에 건의 요망	건 의
20	보 건 소	○ 감사요구자료 제출 내용 미흡	○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제출내용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부분 이 있어 감사시 많은 혼선을 초래한 바, 이를 시정하고 향후 자료제출시는 더욱더 성의있게 자료를 작성, 제출토록 부서장의 관심 촉구	시 정
21	보 건 소	○ 방역용 휴대 연 막기 관리 소홀	○ 하절기 연막방역시 각동에서 사용중인 일부 휴대연막기의 잦은 고장 발생으로 계획된 방역사업 실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파악된 바, 방역인부에 대한 기기사용방법의 숙지와 신속한 유지 관리를 위한 부품 확보·공급 등 대책강구를 철저히 기하기 바람.	시 정

일련 번호	부 시 별	제 목	지 적 사 항	처리 의 견
22	복지사업과	○ 생활보호대상 세대와 소년· 소녀가정세대 의 국민학생 급 식비 상향 조정	○ 법적 보호대상세대의 국민학생에 대한 1일 급식비가 500원으로 산정·지급되고 있으나, 사실상 국민학교 집단급식의 경우 1식 800원 정도로 대급을 받고 있어 점심시간에 일부 학생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 바, 복지시범구로서 결식이농에 대한 급식비의 현실화 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건 의
23	복지사업과	○ 감시요구 자료 에 대한 세출내 용 미흡	○ 감시요구자료에 대하여 종괄적인 현황만 제출되고 복지업무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감사시 혼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 바, 부서장의 관심제고로 향후 성실한 감사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시 정